

『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구자근 의원 외 9인

2. 제안이유

-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
- 구미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,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- 의사자 및 의상자란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함
- 적용범위(안 제3조)
 - 구미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 - 타 지역 사람이 우리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- 지원사업 등(안 제4조)
 - 의사자 특별위로금 : 1천만원 이하
 - 의상자 특별위로금 : 1급~9급까지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지급
 - 1급, 2급 : 600만원 이하 - 3급, 4급 : 400만원 이하
 - 5급~9급 : 200만원 이하
 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

○ 예우 등(안 제5조)

-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
-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
-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등

4. 참고사항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타인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금 외에
- 우리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7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타 지역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
-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, 의상자에게는 1급에서 9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음

-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의사상자에게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의한 포상과 시 단위 각종 행사의 초청예우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